



## 창 원 지 방 법 원

### 제 3 - 2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25나11811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하우원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5. 8. 선고 2025가소1117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2.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형 가전제품·주방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시장 유통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원고 웹사이트'라 한다)에서 소형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 1. C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들의 판매 상세페이지 등의 제작을 위한 콘텐츠 개발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20. 7. 1.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판매할 예정인 'E'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판매 상세 페이지(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는 2020. 7. 2. 위 상세페이지를 원고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공표하였다.

라. 원고는 F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그 저작권을 등록하였다(등록번호 : G).

마. 피고는 2023. 9. 5.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H'이라는 명칭의 쇼핑몰(이하 '피고 쇼핑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제품을 소개하는 판매 상세 페이지에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하였다.



바. 원고는 위 마.항 기재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24. 6. 20.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약352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쇼핑몰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세 페이지에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기초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정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2조 제17, 18호에 따르면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가리킨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참조).



이 사건 저작물은 화면의 전체적인 구성을 통하여 이 사건 제품의 기능과 장점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창작자가 그 나름대로 사진, 영상, 문구 등을 배치·나열한 집합물이고,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제4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나, 그 사용료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용역계약서(갑 제7호증)는 '공급자(C)'가 원고의 제품 상세 페이지를 개발,



제작 및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 제작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비용에 원고의 다른 제품에 관한 상세 페이지 제작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 1,760,000원이 이 사건 저작물 제작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작업의뢰견적서(갑 제5호증)의 5,500,000원 역시 이 사건 저작물 제작비용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한 홈페이지는 I 홈페이지 1개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게시한 기간을 알기 어려운 점에 더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 목적과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5.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5.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장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9

판사            이정현

판사            하정훈